

# 충청북도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(안)

## 심사보고서

내부위원회  
1995. 10. 12.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. 제출일자 : 1995년 8월 8일

. 회부일자 : 1995년 8월 8일

다. 상정일자

. 제116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(1995. 8. 22.) 상정,

-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- 유보의결

제118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(1995. 10. 12.) 재상정

- 보충설명 및 심의의결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무국장 최경주)

가. 제안이유

-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는 자에 대하여 도세를 면제하여 주고자 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뿐만아니라  
    아파트형 공장을 분양·임대하는 경우도 면제
-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·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공장  
    이외의 용도로 분양·임대한 경우 면제된 도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함.

#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 전문위원 오 창 환 )

충청북도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,  
이는 충북지역 도내에 중소기업을 설립코자 하거나 또는 전입유치를 희망  
하는 외부자본가의 중소기업 입지선정 문제를 고려하여  
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을 해소해 나아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 
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 
현행 조례에 있어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 또는 허가받은자 및 아파트형  
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도세감면  
혜택을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 뿐 만 아니라  
아파트형 공장을 분양·임대하는 경우에도 면세 혜택을 확대 시행하여  
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시켜 주고자 함과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시의  
조건부 의무이행을 실행하지 않은자에 대하여는 면제된 도세를 추징할 수  
있도록 추징규정을 명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 
본 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 향상차원 및 지역사회  
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유치방안의 일환으로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 
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제119회 임시회 개회 이전에 지방세 문제와 관련하여  
다각적인 지방재정확충방안과 조례별 감면세액현황 및  
지방세감면시 충북에 돌아올 수 있는 반사적이익 또는  
혜택에 대하여 자료제출과 동시에 내무위원회에 보고할  
것을 전제로 도원안대로 의결(참석 8인, 찬성 8인)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. 충청북도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(안)
- . 신구조문대비표